

수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43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결 2017. 8. 24.

판결 선고 2017. 10. 19.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21559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B 전 205㎡에 관하여 2016. 7.9.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6. 9. 20.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1981. 9. 18. 대통령령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성남시수정구 B 전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대금 186,000원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성남시 C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피고는 1977. 3. 18. 원고 앞으로 수용대금 및 이자 합계 187,000원을 현금 27,000원과 권면액 10,000원인 유가증권 16장(발행일 1976. 2. 1., 상환기간 10년)으로 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1981.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피고에 의해 군사 목적으로 수용되었으나 이후 최근까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등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환매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수용에 관하여 어떠한 통지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수용은 그 통지가 원고에게 등기 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여전히 유효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한편, 특별조치령은 헌법재판소가 1994. 6. 30. 92헌가18호로 특별조치령의 모법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피고는 특별조치령이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자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7. 1. 13. 국보위수용토지법을 제정·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다. 판단

1) 국보위수용토지법 제2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상속인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1977. 3. 18. 원고 앞으로 수용대금 및 이자 합계 187,000원을 현금 27,000원과 권면액 10,000원인 유가증권 16장(발행일 1976. 2. 1., 상환기간 10년)으로 공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수용대금으로 지급된 위 유가증권은 1987. 2. 1. 상환이 모두 종료(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상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2. 2. 1.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내지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수용 이래 방공작전 시설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군사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이 사건 소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기인 1992. 2. 1.로부터 10년을 이미 도과한 2016. 6. 2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별조치령 제31조는 국방부장관은 특별조치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수용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수용자 및 담보물권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피수용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76. 9. 20. 이 사건 수용결정 당시 특별조치령 제31조 제1항에 의해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성남시 C로 수용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통지를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만약 이 사건 수용결정이 무효라면 무효인 수용결정에 기초하여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최유경, 판사 민경현

별지

관계 법령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내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③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국가동원령)

- ① 비상사태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국에 걸쳐거나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1981. 9. 18. 대통령령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동원령이 발하여진 동원대상지역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토지의 사용과 수용을 신속하게 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보위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

- ① 보상금은 이를 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액이나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 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보상금에 대한 이율은 연 5푼으로 한다.

제21조(공탁)

- ① 한국은행은 피사용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사용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29조(수용)

- ① 국가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이 영에 의하여 사용된 토지로서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이 영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수용통지)

- ① 국방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수용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피수용자"라 한다) 및 담보물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수용자 및 담보물권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피수용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그 수용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금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이나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있는 경우 국가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 위의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된다.

제35조(준용규정)

제19조 내지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끝.